CEO Report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4. 7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2014년 7월 정책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①가격자유화 ②재무건전성 ③소비자 신뢰로 재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정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 보완·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CONTENTS

Ⅰ. 서 론 ·· 1

Ⅱ. 가격자유화 ··· 2

1. 위험률 ··2
2. 이율 ···3
3. 가격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 ·····················4

Ⅲ. 재무건전성 ··· 6

1. RBC 강화 ··6
2. 부채시가평가 대응 ·······································7
3. 위험 경감 수단 제공 ····································7

Ⅳ. 소비자 신뢰 ··· 9

1.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9
2.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 ····11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11
4. 판매채널 다변화 ··13

Ⅴ. 시 사 점 ·· 15

Ⅰ. 서 론

■ 2014년 7월 정책당국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함.

- 금번 정책은 크게 볼 때 강력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 지원 기능과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단순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 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본고는 보험 관련 정책을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통적인 금융 정책 방향의 틀에서 요약하고자 함.
- 따라서 본고는 정책 내용을 크게 ① 가격자유화, ② 재무건전성, ③ 소비자 신뢰로 나누어 요약하고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Ⅱ. 가격자유화

■ 위험률 및 이율과 관련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자유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강구되고 있음.

- 위험률 할증 범위와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표준이율도 시장금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가격자유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
- 그러나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 정산,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이 자유화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구

1. 위험률

■ 안전할증 확대

- (내용) 현재 위험률에 30%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으나,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 (평가)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2. 이율

■ 예정이율 자율화

- (내용) 보험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

- (평가) 표준이율 및 구두지도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하는 관행을 개선
  - 보험회사별로 차별화된 보험료 산출을 유도하여 건전한 경쟁 촉진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기대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 (내용) 공시이율[1]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금리과당 경쟁으로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2013년 4월)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쟁제한 및 리스크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

- (평가)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강화

■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 (내용)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산출방식을 시장금리 추이가 반영되도록 변경
  - 표준이율 산출식에서 기준금리(3.5%)를 제거하고 금리구간별 안전계수를 설정하여 현행 산출식에 비해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되

---

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

는 구조로 변경

- 시중금리 계산을 위한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안전성 확보
- (현행) 3.5%+안전계수×시중금리 → (변경안) 금리구간별 안전계수×시중금리
- 단,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평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와 더불어 표준이율이 불필요하게 예정이율을 제약할 여지를 제거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높은 표준이율 적용 인센티브가 표준이율 인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
- 예정이율 자율화가 정착되면 표준이율은 준비금적립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연계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3. 가격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

■ 위험률차익 정산제도 마련

• (내용) 안전할증률 확대의 효과가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

• (평가) 사후정산은 위험률차 부분배당과 유사하므로 유배당 상품 활성화와 함께 논의할 필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

- (내용) 금리가 하락할 경우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의 영향이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 인하 등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
  - 예를 들어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 (평가) 보험상품의 보험만기와 납입만기 구조는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

유배당 상품 활성화

- (내용)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익배분률의 변화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
  - 현행 9:1인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화하고 보험회사에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

- (평가) 단종 위기에 있는 유배당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Ⅲ. 재무건전성

■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과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

- 지급여력 기준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2018년 IFRS 2단계로 인한 부채시가평가를 부채적정성 평가(LAT)의 단계적 강화로 대응
  ※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
-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 경감 수단 제공

1. RBC 강화

■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

- (내용)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회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국제기구 평가(FSAP) 및 부채시가 평가 도입(IFRS 2단계, 2018년 도입)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완료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평가) 보험회사가 스스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일정 조정 노력으로 평가

2. 부채시가평가 대응

■ 국제회계기준 대응

- (내용)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강화하여 부채시가 평가 도입(IFRS 2단계, 2018년 도입)에 미리 대응
  - 전문가 T/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
- (평가)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유도
  - 지급여력규제와 부채시가평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 필요

3. 위험 경감 수단 제공

■ 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

- (내용)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
- (평가)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헤지수단을 다양화

■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여력 인정(손보만 해당)

- (내용) 비상위험준비금[2]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이연법인세)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 이연법인세는 올해까지만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사례 및 회계처리 기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인정을 허용

- (평가) 지급여력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에 도움

2)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적립하는 금액(회계기준상 자본 항목)

Ⅳ. 소비자 신뢰

■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을 통한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대한 정책당국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소비자 신뢰 제고 관련 정책은 ① 모집질서 건전화, ②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 ③ 소비자 알 권리 강화, ④ 채널 다변화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판매 채널 다변화에 따라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1.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 (내용) 보험설계사의 모집활동에 대한 이력관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모집질서 건전화를 추진
  - 보험협회는 설계사 모집이력 정보를 집적 및 제공하여 보험회사나 대리점의 설계사 위촉시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함.

- (평가)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설계사들이 책임감 있는 보험모집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

GA 관리·감독 강화

- (내용) 일정 규모 이상(예: 500인)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이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불량한 대리점의 실질적 퇴출 및 재진입 억제 방안을 제시할 계획
- (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원칙화[3]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판매자 책임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

시장규율 및 제재수준 강화

- (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반복적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설정
  - GA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계속적·반복적 위법행위 및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율 강화,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적 재진입 방지, 과태료·과징금 체계 정비 및 제재체계 점검 정례화 방안 등을 추진
- (평가) 시장규율 및 제재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설계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법령위반에 따른 설계사들의 이탈로 영업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3) 해당 내용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과 함께 발표된 금융권 전체에 대한 정책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

2.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

■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강화

- (내용) 유관기관간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과정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기 연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마련
- (평가)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유관기관간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한 보험사기 인지기능 제고도 필요

■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

- (내용)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 대한 정의 및 제재를 보험업법에 규정
  -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 안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현황을 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
- (평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보호간 조화 및 균형을 시도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활동 위축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

- (내용) 보험약관을 비롯한 상품공시가 정보의 중복 및 과잉으로 소비자의 이해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
  - 중복 및 과잉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 간소화와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개선

-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 소비자 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평가) 공시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는 자유경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

■ 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대

- (내용) 보험소비자의 경우 상품내용 확인과 가입여부 판단 시 보험약관보다는 보험안내자료에 더 많이 의존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 및 확인 절차가 없어 관련 제도를 개선
  - 평가대상 자료는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 (평가)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

- (내용) 상법 및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는 일반 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요청 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 또는 안내하도록 설명의무 강화

- (평가) 실질적 보험가입자이자 보험서비스 수혜자인 단체보험 피보험자들이 동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 및 보상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판매채널 다변화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 (내용) 제품 및 서비스 연계보험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
  - 예를 들어, 휴대폰대리점이 휴대폰 판매 시 휴대폰보험, 수의사가 동물진료 및 치료 시 동물보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 등을 판매
- (평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으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설명의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관리대상 대리점의 증가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품 및 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

- (내용) 이동통신회사와 같은 거대기업이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매개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
  -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보상책임에 대해 보험회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
- (평가) 업무위탁 형태로 제품·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보호에 기여

■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 검토

- (내용) 소비자 니즈가 있는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도입을 검토

- 이외에도 온라인 펀드수퍼마켓 보험상품 취급, 계열사 간 복합점포 활성화 등의 추진 또는 검토[4)]

- (평가) 판매 채널의 다변화가 확대되면서 보험회사의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해당 내용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과 함께 발표된 금융권 전체에 대한 정책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

Ⅴ. 시 사 점

■ 금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취지가 실효성있게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정책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가격자유화 관련 정책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 당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양한 대비책이 강구되면서 그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폭 넓은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자유경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유화 정책이 실효성있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관리 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판매, 지급, 공시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GA, 금융기관 대리점 등 독립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곧 보험회사 자체 채널에 대한 건전화 부담도 확대됨을 의미함.

- 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취지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관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단종보험대리점, 복합점포 등 새롭게 보험판매가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판매 채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토록하고 있어 판매 단계에서의 보험회사의 책임이 줄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저자약력

▌이 태 열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정책실)
(E–mail : tylee@kiri.or.kr)

▌조 재 린

캐나다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전략실)
(E–mail : jrincho@kiri.or.kr)

▌황 진 태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정책실)
(E–mail : jt0813@kiri.or.kr)

▌송 윤 아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정책실)
(E–mail : knuckleball@kiri.or.kr)

CEO Report 2014–0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 행 일	2014년 7월
발 행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3775–9010)로 연락하여 주십시오.